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

일시 2022. 3. 23.(수)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 주 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사)소비자권익포럼 · 미래소비자행동 ·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

보건의료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전문성 강화, 사회적 기능의 다양화 등 국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재구축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기존 의료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 이외에 지역사회, 학교, 가정 등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의 발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3월23일 (수요일)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튜브 녹화중계 채널 “컨슈머맵”

□ 공동주최 :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 공동주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사)소비자권익포럼 · 미래소비자행동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PROGRAM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제1부 개회식 (14:00~14:20)

사회 김향자 공동대표 (미래소비자행동)

○ 개회사

- 김민석 위원장
- 김성주 의원
- 강기윤 의원
- 서정숙 의원
- 최연숙 의원

○ 인사말씀

- 백대용 회장 (사)소비자시민모임
- 양세정 이사장 (사)소비자권익포럼
- 김향자 공동대표 (미래소비자행동)
- 이선희 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축사

-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

제2부 대국민토론회 (14:30~16:00)

○ 발제1.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간호의 역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간호의 전문화 및 다양화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9

○ 발제2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시사점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 35

○ 지정토론

좌장 이은영 고문 (사)소비자권익포럼

고인석 교수(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51
정지연 사무총장((사)한국소비자연맹)	54
전동환 기획실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56
김원일 정책자문위원(대한간호협회)	59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65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67
백영미 기자(뉴시스)	70
양정석 과장(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73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강기윤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과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며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호법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주실 발제자,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는 양질의 간호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양질의 간호인력은 종합적인 간호 정책에 의해 확보될 수 있으며, 종합적인 간호 정책은 간호법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국민이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간호법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지금, 국민께서도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간호사들의 호소에 응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약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법으로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응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야 3당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서정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운 간사님이 함께 해주시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인력의 헌신을 접해왔습니다. 유래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K-방역은 간호인력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되며 간호정책 수립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서 신설만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호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법체계 구축이 범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간호인력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간호

법의 부재는 제도가 의료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여러 전문가들께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의 현실에서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 한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특정 의료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사안입니다.

국회가 다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의 결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님'과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석해주신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고문님', '호서대학교 고인석 교수님', '(사)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님',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님',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님', '보건의료산업노조 오선영 정책국장님', '뉴시스 백영미 기자님',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깊은 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최를 위해 고생해주신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성 주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저와 함께 뜻을 모아주신 김민석 보건복지위 위원장님, 서정숙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대용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님, 양세정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님, 김향자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님, 이선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제정안 3건의 통합심사를 위해 공청회, 소위심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매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돌파하고자 보건복지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정부가 나서서 각 직역단체들과 함께 「간호법」통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양당 후보들이 「간호법」제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제정은 공회전 상태입니다. 난관에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의 법적 통일성, 직역단체 간의 시각에 서만 바라보는 대신,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는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증진’차원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해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합니다.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시각을 담아내고,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간호법」제정 난맥해소의 첫걸음이자 변곡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법안심사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강기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개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수가 1천만명을 넘어선 위중한 시기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1983년 창립) 백대용 회장님, 국회를 향해 소비자 권익을 주장해오고 있는 소비자권익포럼(2017년 창립) 양세정 이사장님, 적극적인 소비자행동을 조직하고 펼치고 있는 미래소비자행동(2017년 창립) 김향자 공동대표님,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017년 창립) 이선희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입니다. 초고령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았습니다.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만 보아서는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저의 정책적 소신으로서, 지난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공청회도 개최되고, 법안심사도 이루어졌으며, 직역간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됨으로써, 지난해는 간호법안 발의 16년 역사에서 입법을 향한 진일보한 해였습니다.

오늘의 대국민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을 향해 또 한걸음 더 전진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간호의 역할, 보건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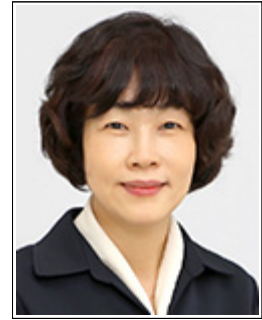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보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개회사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연숙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강기윤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사) 소비자시민모임, (사)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분들과 오늘 토론회의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러차례 열렸습디만, 오늘은 여러 소비자단체와 간호업무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해서 다른 토론회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오늘 토론 패널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참석해주셨는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두 단체가 이렇게 토론의 장에 참여한 것을 보면, 저는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교수님께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간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 주시고, 조윤미 상임대표님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발제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겠지만,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진행상황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공유되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공론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각 정당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청회와 2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의 간사이신 김성주 의원님과 강기윤 의원님께서 함께 주최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선마저 끝난 마당에 법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당사자로서 간호법 제정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연숙**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인사말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 이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증진 방안 모색되어야 !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양세정입니다. 오늘 제33차 소비자권익포럼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소비자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 행정, 사법의 공적영역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민간단체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를 향하여 입법과 국정감사에 소비자권익의 향상을 요청하는 민간단체로 사업자의 부당한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위해평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의료정보활용과 개선방안”,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체계 혁신” “대체육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대응방안 모색” 등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고 그 개선안을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을 주제로 창립기념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전자화폐 시대를 맞이하여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포럼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중심 ESG좋은기업만들기 의미와 과제”와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등을 주제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5년간 총 32회 국회를 통한 소비자의제 개발과 정책제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각 분

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돌봄이 개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간호는 의료기관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전문성, 다양성의 강화는 국민보건에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으며 간호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간호사와 간호인력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70년 묵은 의료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다 선진화된 간호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당 간사인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신 (사)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님과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허영숙, 김향자 대표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와 고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사)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양 세 정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인사말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시급히 해결해야 !



안녕하십니까?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향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간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소비자권익포럼에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2011년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소비자단체로서, 시장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 건강의 위협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 실천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해 부터 전국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수원), 강원(원주), 대전충남(대전), 광주전남(광주), 경남(창원)에 지부를 설립하고 지역사회 소비자 및 환경, 미래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능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선진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 속에서 소비자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간호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비자운동 과제로서 간호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소비자 요구와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소비자단체가 마련한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양당 간사인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그리고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신 (사)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님과 (사)소비자권익포럼 양세정 이사장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현 교수님과 조윤미 상임대표님, 그리고 어려운 걸음을 마다않고 오셔서 토론을 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그밖에 지원인력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대국민토론회를 통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상황을 끝까지 잘 매듭지어 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속적으로 미래소비자행동의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김 향 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인사말씀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시급히 마련해야 !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선희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오미크론 증폭의 고지에서 의료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의료현장은 간호인력 부족과 업무과중, 간호업무 범위 부재로 인한 불법의료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고, 야간 근무를 포함한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병원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료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월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민간병원 확대 적용, 불법의료 근절, 야간간호료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으로 노정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되거나,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간호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실제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구체적인 간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간호업무 범위, 전문인력 양성·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다양화되고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는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에 있어서도 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인력은 고스란히 간호 업무 과중과 불법의료로 드러나 간호사들의 고충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간호사의 활동영역은 넓어졌지만 의료법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사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어 질병예방 및 만성 질환 관리, 노인간호, 가정간호 등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시대와 사회적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정 당시에 비해 간호사의 역할이 확연히 확대되었고, 간호가 다른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공감하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간호사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 선 희**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입니다. 오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님, 국민의힘 강기운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에서 대표발의하신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치료 중심의 현 의료법만으로는 오는 2025년 도래할 초고령사회와 국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없기에,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의료취약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1903년 한국 최초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근대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독일, 미국, 중등 등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격동의 역사 현장마다 도전과 용기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을 다해왔습니다. 이렇듯 간호사는 지난 100여 년간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1년 365일 24시간 환자 곁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사는 정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선진 외국 간호사에 비해 2~4 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결국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인 간호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호정책을 마련하는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3당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을 하였고,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할 단계입니다. 국민의 80%가 원하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 국민이 기대하는 간호사 권익향상, 적정 수급부터 배치, 교육, 그리고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등 국민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절한 열기가 국민 한분 한 분께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48만 간호사를 대표하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간호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 경 립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주제발표 1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간호의 역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간호의 전문화 및 다양화 -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jinhyun@snu.ac.kr

주·제·발·표 1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간호의 역할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2022.3.23)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간호의 역할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간호의 전문화와 다양화

김진현
(서울대학교)

1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압축적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

-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상
- 고령인구는 2050년부터 전체 인구의 40% 수준으로 증가 예상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계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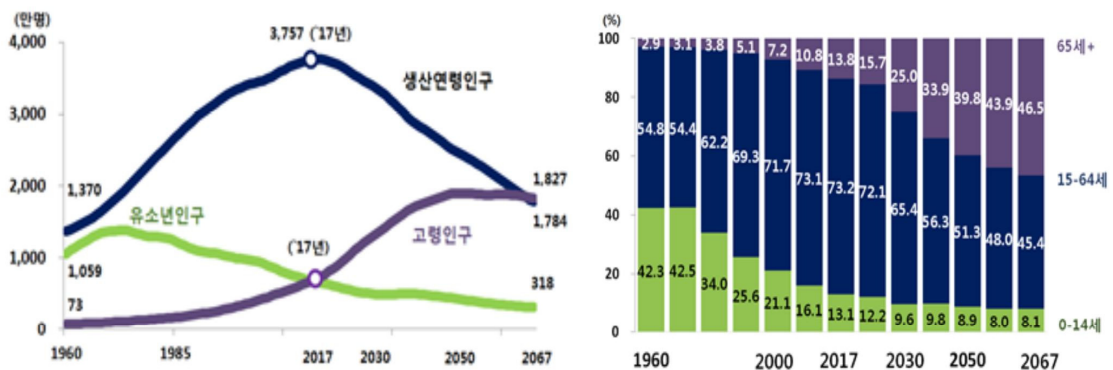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인구(A)	51,362	51,781	51,905	51,927	51,630	50,855	49,574	47,745
65세 이상(B)	7,066	8,125	10,511	12,980	15,237	17,224	18,329	19,007
B/A(%)	13.8	15.7	20.3	25.0	29.5	33.9	37.0	39.8

자료: 통계청(2019년 3월 공표).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

2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73.2%를 정점으로 이미 연간 30만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자료: 통계청(2019년 3월 공표). 장래인구추계, 주요 인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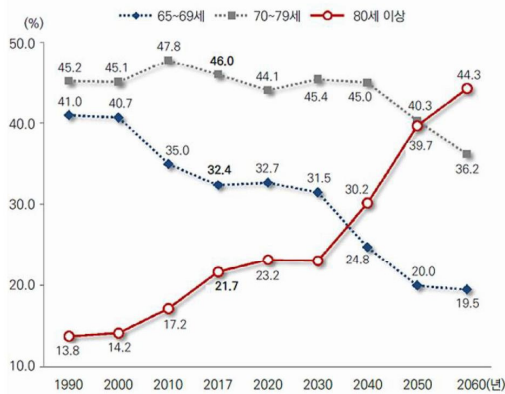
3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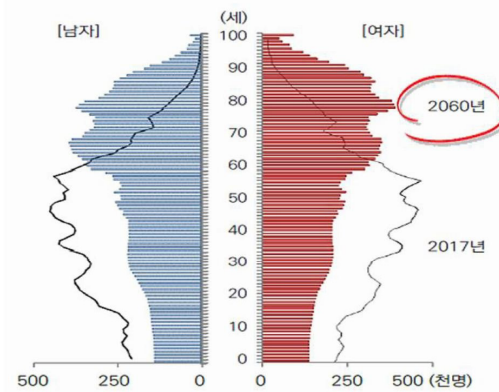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변화

✓ 2017년 전체 인구 5,144만6천명, 이 중 65세 이상 13.8%(707만6천명)→2060년 41.0%
 → 65세~69세와 70~79세 비중 감소하는 반면, 80세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고령자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인구 피라미드 추이]



자료 : KATS(2018), 기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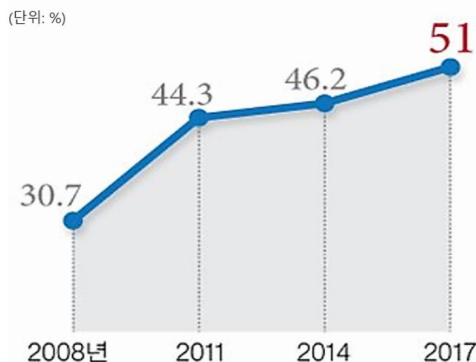
4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노인 2명중 1명은 3개 이상 만성질환, 유병장수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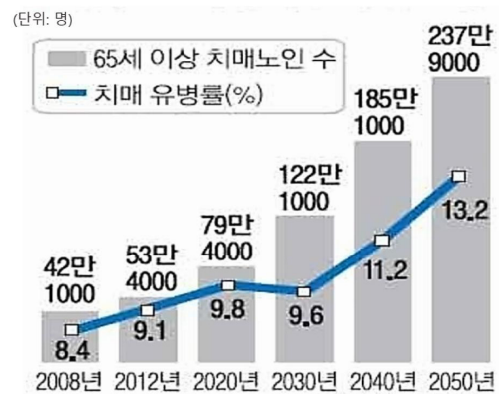
✓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비율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증가
 → 노인 돌봄수요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 증가(2008년 기준 4%p↑), 관련인력 3배↑

[65세 이상 노인 복합만성질환 이환율, 2008-2017]



*주) 조사대상자 중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

[치매노인 증가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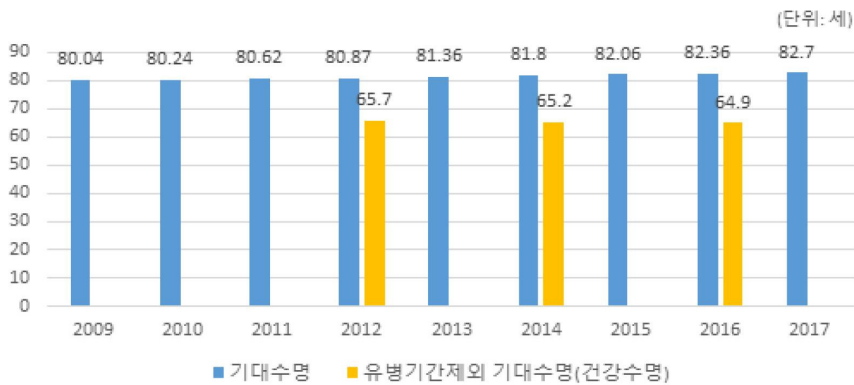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5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 최근 기대수명은 82세 내외, 건강수명은 65세 전후로 나타나고 있음
- 건강한 고령화는 삶의 질, 복지재정 지출과 노인의료비 절감에 중요



6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고령화로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 한계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건소방문건강관리, 지자체 통합돌봄 등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주요 서비스	(요양병원) 장기입원서비스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거 (집수리 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등)
	(급성기병원) 입원환자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영양음식지원, 아동지원서비스, 스마트홈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종합병원 연계) 가정간호		보건의료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약료, 방문재활, 검진비 지원 등)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집중사례관리, 심리검사 및 진단비 지원 등) 돌봄요양 (주야간 돌봄 사업, 등급외자 가사지원사업, 돌봄요양 비용지원 등)

7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고령화로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 한계

- 총인구의 14%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40% 이상 지출. 향후 노인의료비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국민의료비는 GDP의 8%를 이미 초과하여 급증하고 있음.

노인의료비 현황과 전망

구분	건강보험 총진료비(A)	노인인구의진료비 (B)	B/A
2014년	545,275	193,551	35.5%
2015년	580,170	213,615	36.8%
2016년	646,623	245,643	38.0%
2017년	779,141	271,357	39.0%
2018년	851,856	311,173	39.9%
2025년	1,455,013	714,271	49.1%
5년 평균 증가율	9.3%	12.6%	

자료: 심평원(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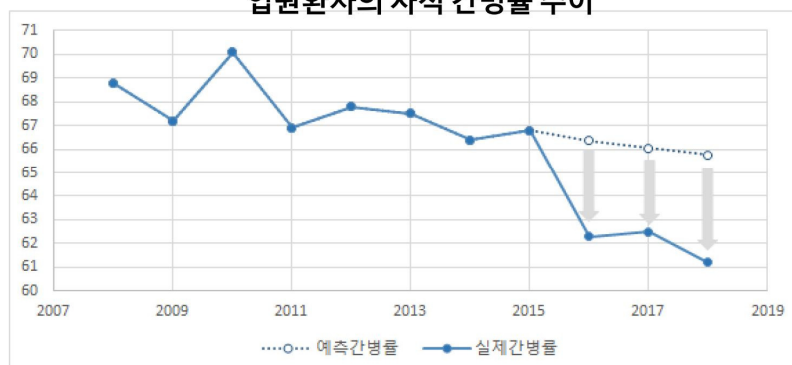
8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고령화로 돌봄수요 증가, 의료비 부담, 가족돌봄 한계

- 2018년 병원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61.2%(유급간병 2.9%, 가족간병 53.9%), 사적 간병비는 연간 7조~8조원으로 추정됨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적 간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률 추이



9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고령인구 급증 → 만성질환 중심 →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 의료기관 중심 질병 치료 → 지역사회 재택 중심 예방 및 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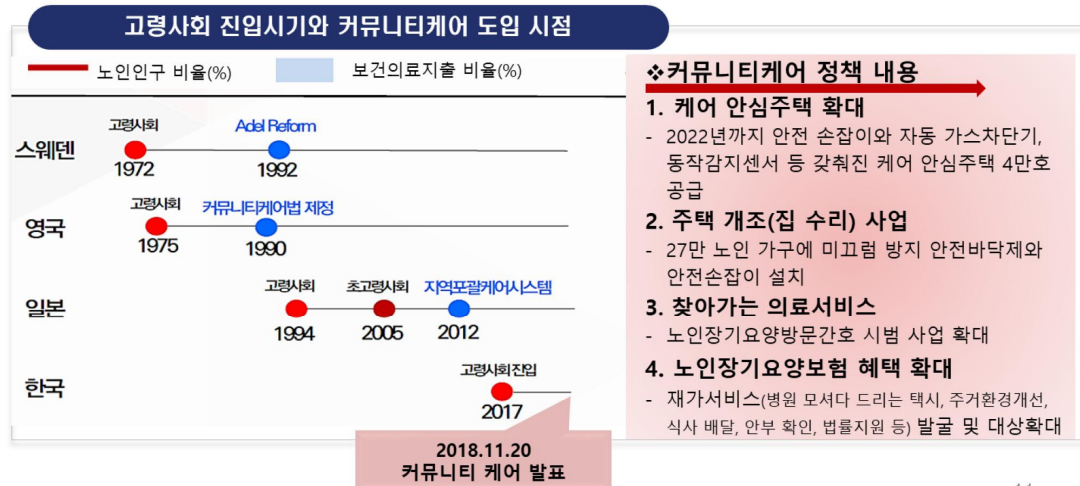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 ✓ 선진국은 고령화,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
- ✓ 한국 →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발표



자료 :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투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17.09)

치매안심센터 확충

전국 보건소에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17.12)

1:1 맞춤형 상담, 검진,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지원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의료비 부담 완화

중증 치매질환 20~50% 본인부담률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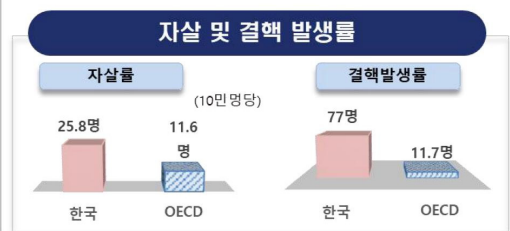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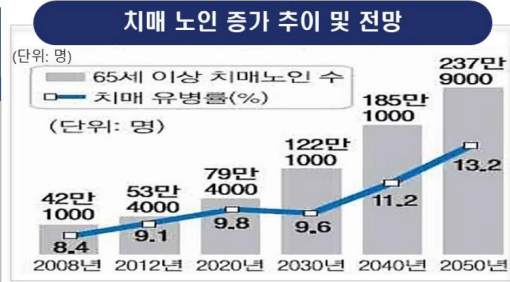
10%

치매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영양('17.10), MRI검사('18.1)

치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등급 신설로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18.1)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전문시설 단계적 확충('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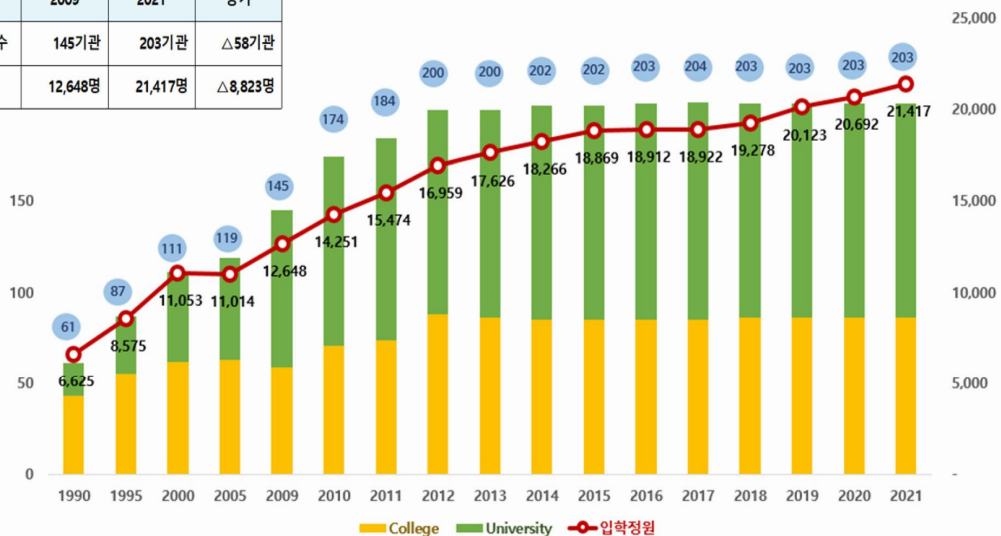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보건복지백서

자료 : OECD Health Data (2018)

2. 간호 현황

간호대학 및 입학정원 현황 (199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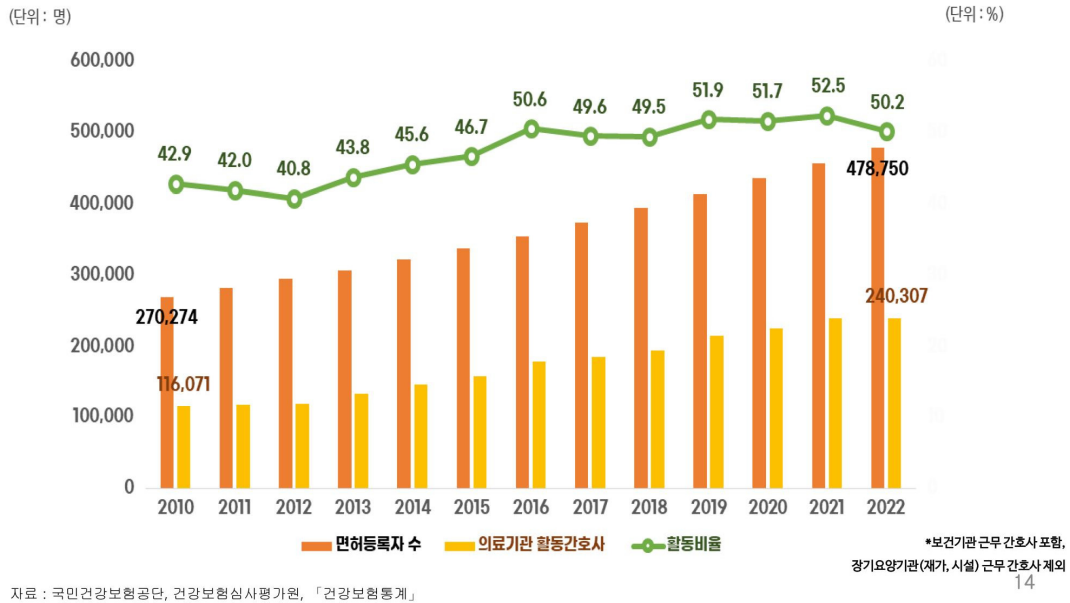
구분	2009	2021	증가
간호대학 수	145기관	203기관	△58기관
입학정원	12,648명	21,417명	△8,823명



자료 : 한국교육협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 신입생 증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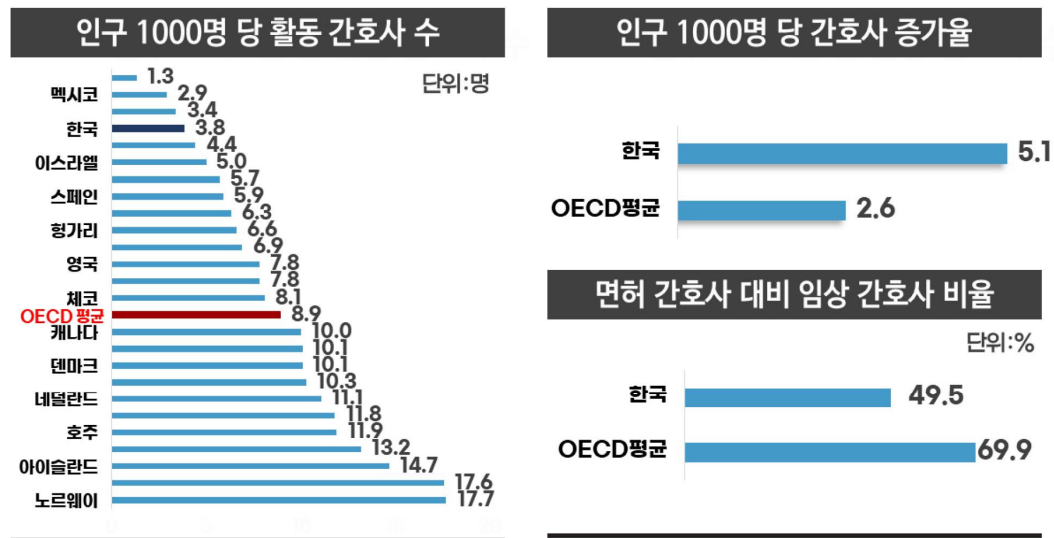
2. 간호 현황

면허 등록자 수 대비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 (200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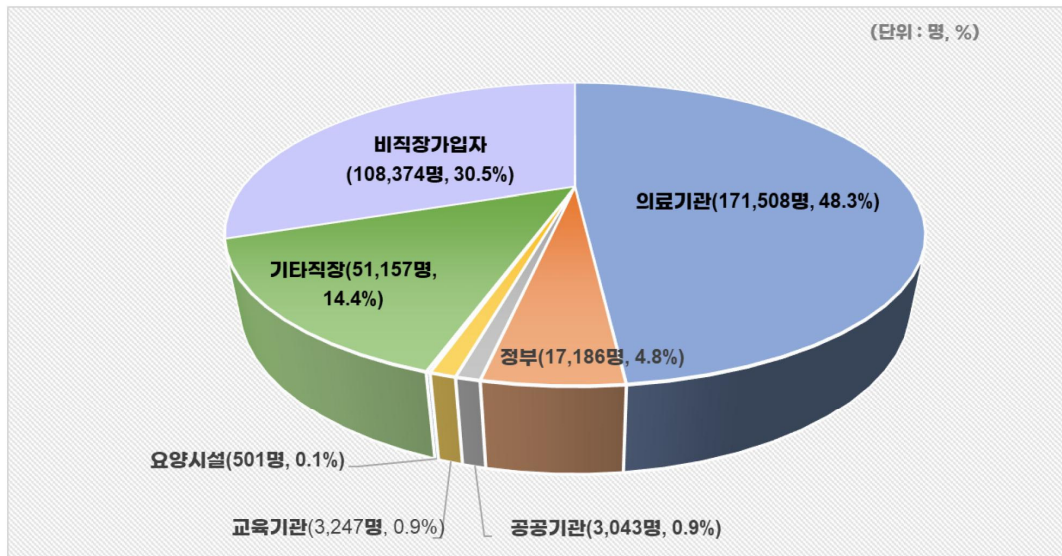
2. 간호 현황

임상간호사의 국제 비교 (2018)



2. 간호 현황

간호사 취업 현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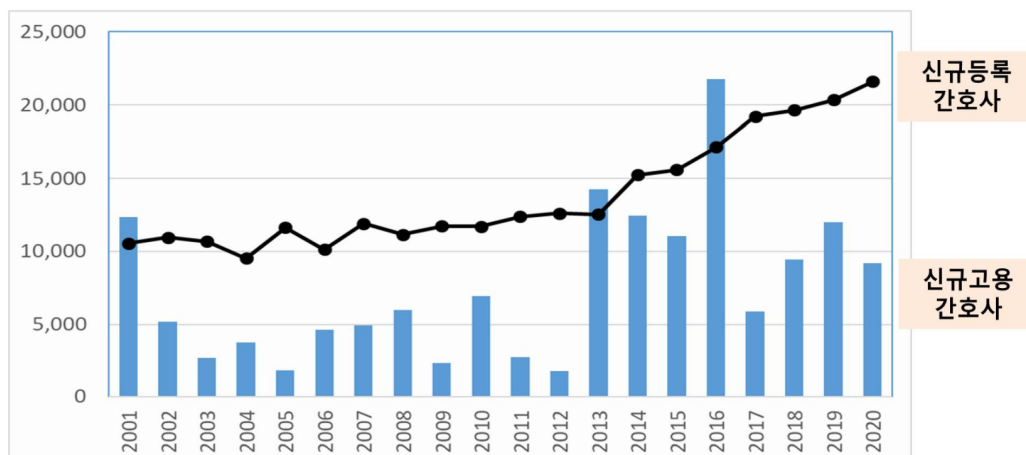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11)

16

2. 간호 현황

- 신규 등록간호사는 신규 고용간호사보다 1만명 이상 초과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간호사 인력의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자료: 보건산업정보센터(2021). 보건의료인력-면허 조산사-간호사수.

17

2. 간호 현황

간호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18

3. 간호의 전문화와 다양화

비약적인 간호사의 성장과 발전

- ✓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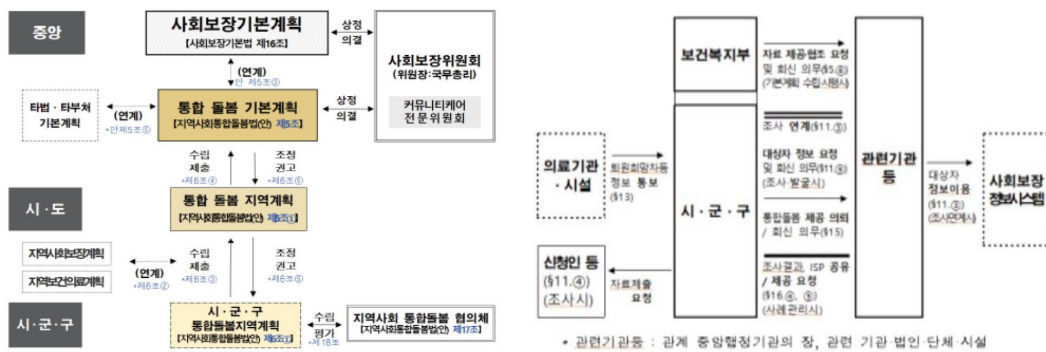
19

3. 간호의 전문화와 다양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간호의 전문영역 다양화

✓ 증가하는 노인질환 예방과 지원강화를 위해 맞춤형 간호간병 돌봄인력 양성 필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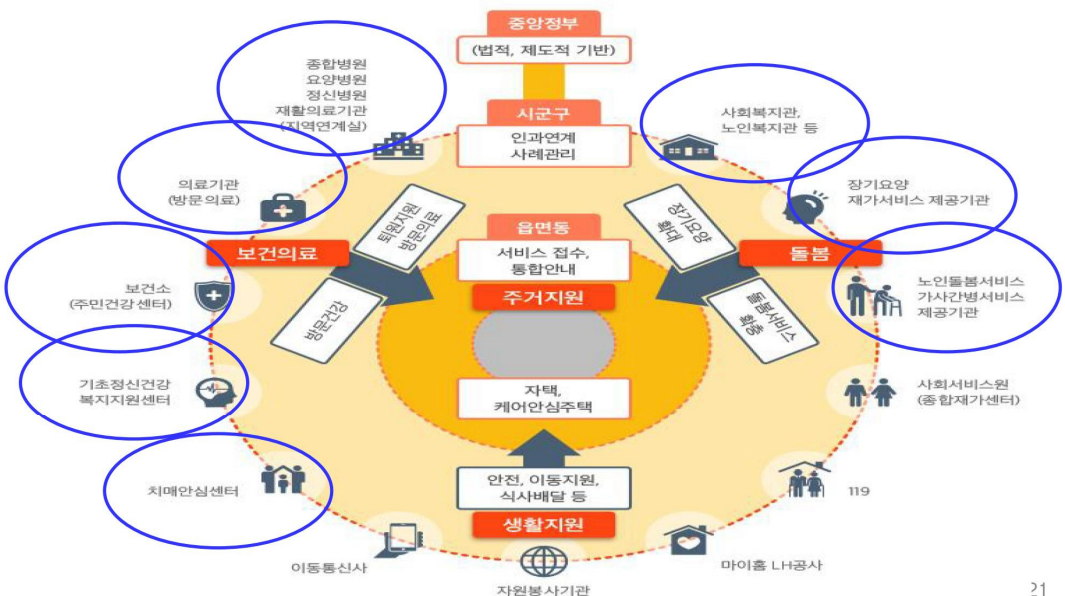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0),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자료집.

서비스전달체계

3. 간호의 전문화와 다양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간호의 전문영역 다양화



3. 간호의 전문화와 다양화

국가적 재난, 위기 대응역량 확보 필요

✓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택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방역시스템 마련 방안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법체계 수립 필요**

- **현행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 운영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
 - 의료법 총 131개 조문 중 83개(63%)가 의료기관 개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 의료기관과 관련된 사항임
 -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독립된 법체계 → 시대 변화에 따라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간호수요 대응 및 365일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법률 필요**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독립된 법 제정 시급”

3. 간호의 전문화와 다양화

간호인력 활용으로 사회적 편익 극대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감사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주제발표 2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시사점 -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can.or.kr

주·제·발·표 2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

20220223_간호법 대국민토론회


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 Action for Future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시사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02-706-1372 consumer@can.or.kr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설문조사 배경

- 의료인이 간호사와 간호관련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법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과제임.
- 돌봄이 사적영역의 개인책임에서 점차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간호 지식과 기술을 기반한 간호전문서비스, 간호지원, 요양, 돌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많아지게 될 것임
- 과거 의료기관 중심의 인력 양성과 법체계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간호인력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인력의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음.
- 지역간의 이익 다툼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간호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반소비자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목적의 설문조사를 진행함

2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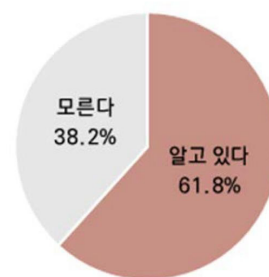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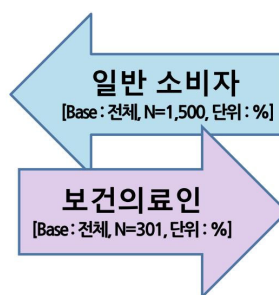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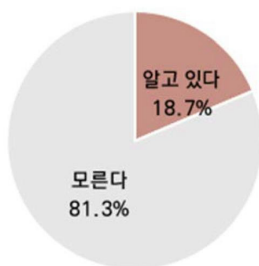
구분	조사 설계 내용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일반 소비자 1,500명(허용오차 : ±2.53%)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1차 : 2021년 12월 22일 ~ 12월 23일 ○ 2차 : 2022년 2월 3일 ~ 2월 6일																
주요 조사내용	○ 국내 의료법규(간호법)에 대한 인지 및 견해 ○ 간호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 코로나19 상황과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한 견해 ○ 국회 상정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 등																
조사대상	○ 보건의료인 301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례수</th> <th>간호사</th> <th>간호 조무사</th> <th>요양 보호사</th> <th>보건교육 전문가</th> <th>영양사</th> <th>의사</th> <th>약사</th> </tr> </thead> <tbody> <tr> <td>(301)</td> <td>226</td> <td>206</td> <td>120</td> <td>80</td> <td>66</td> <td>53</td> <td>37</td> </tr> </tbody> </table>	사례수	간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보건교육 전문가	영양사	의사	약사	(301)	226	206	120	80	66	53	37
사례수	간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보건교육 전문가	영양사	의사	약사										
(301)	226	206	120	80	66	53	37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1년 12월 23일(목)																
주요 조사내용	○ 국내 의료법규에 대한 인식 및 견해 ○ 간호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 ○ 현 코로나19 상황과 간호사 부족현상에 대한 견해 ○ 국회 상정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 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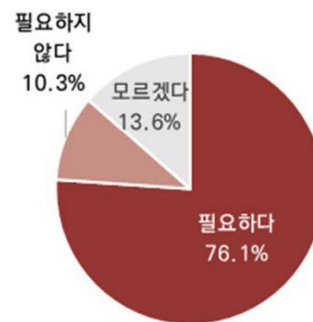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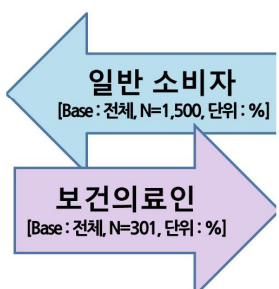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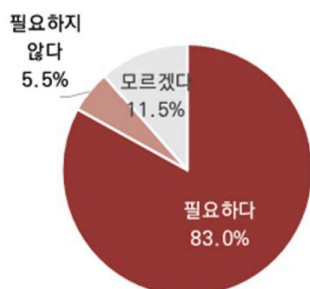
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비자 및 보건의료인 인식

간호법 및 개정움직임에 대한 인식

◆ 국내법규 상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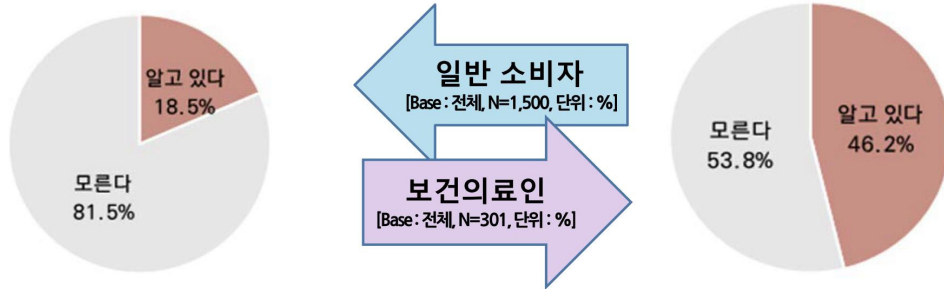


◆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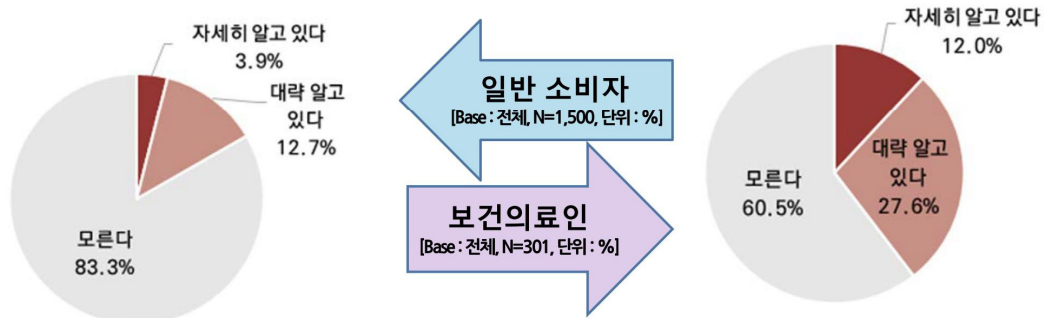


간호법 및 개정음직임에 대한 인식

◆ 간호법 제정이 국회서 논의되는 사실 인지 여부



◆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 주요 내용의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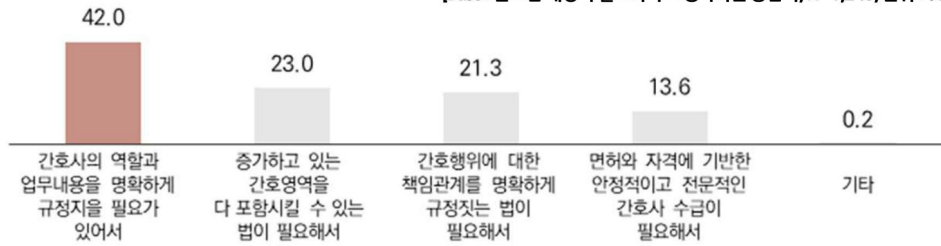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사 (또는 간호인력)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간호영역의 확장을 포괄하는 법의 필요성을 다음 순서로 인식하였음.
-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의 위상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높은 기대효과로 평가하였음
- 소비자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분명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두번째로 꼽은 반면 (7.72점/10점만점) 보건의료인의 경우 간호행위를 위한 교육 체계가 분명해 질것을 두번째 기대효과로 꼽았음 (7.36점/10점만점)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서비스 이용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가장 후순위로 평가를 하여 비용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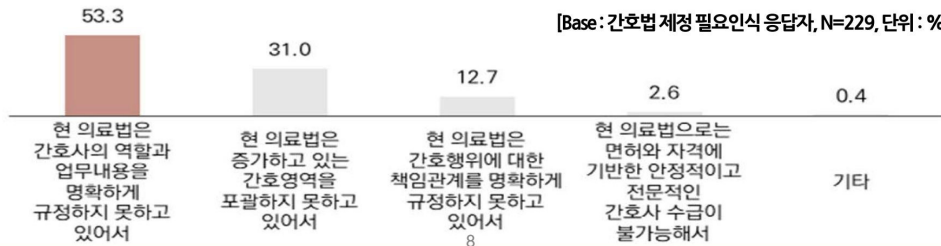
◆ 일반 소비자 의견

[Base: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N=1,245, 단위: %]



◆ 보건의료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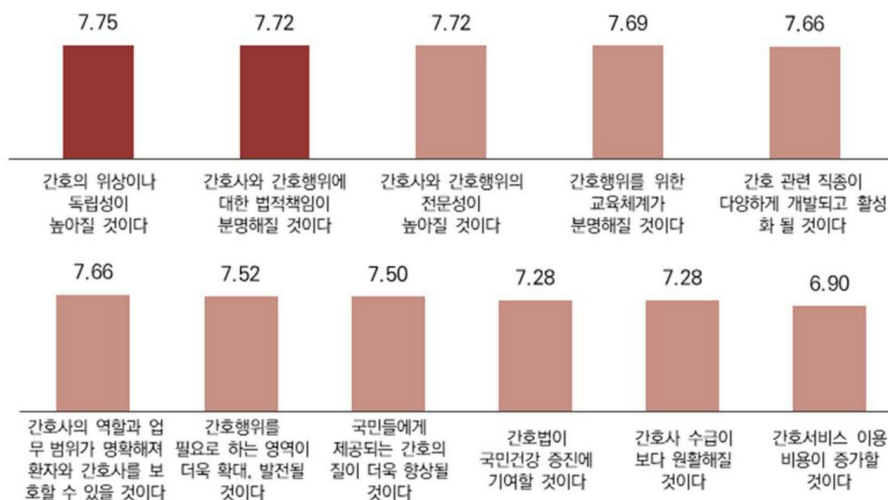
[Base: 간호법 제정 필요인식 응답자, N=229, 단위: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기대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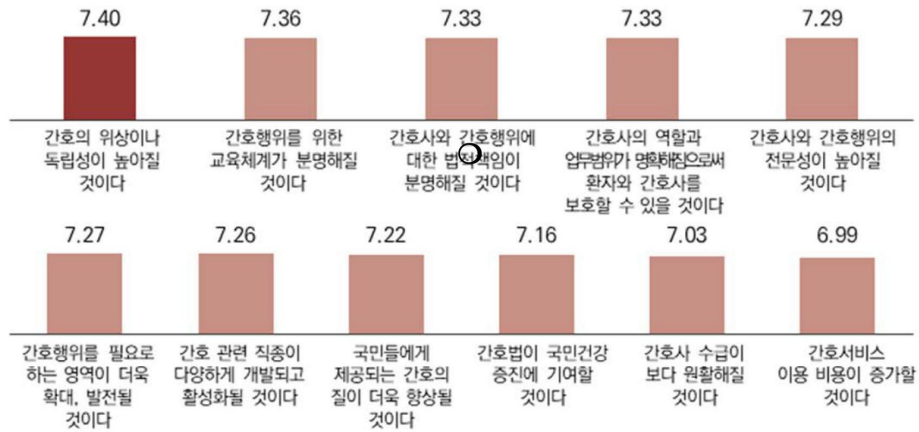
[Base: 전체, N=1,500, 단위: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기대

◆ 보건의료인 의견

[Base: 전체, N=301, 단위: %]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선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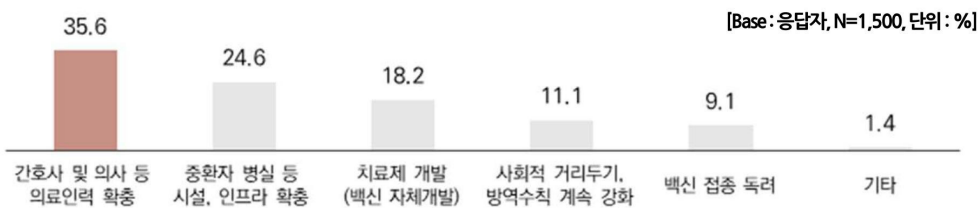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소비자나 보건의료전문가나 모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음
- 간호인력이 부족한 핵심적인 이유로는 의료환경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처우로 인한 높은 퇴직율을 가장 우선 요인을 꼽았음.
-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근무환경 개선을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음. 두번째 과제로는 소비자들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인정, 존중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건의료인은 간호대학을 더 늘려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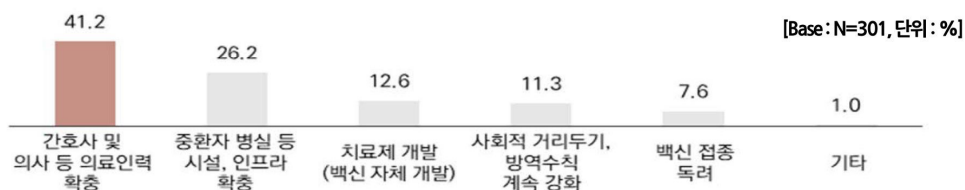
12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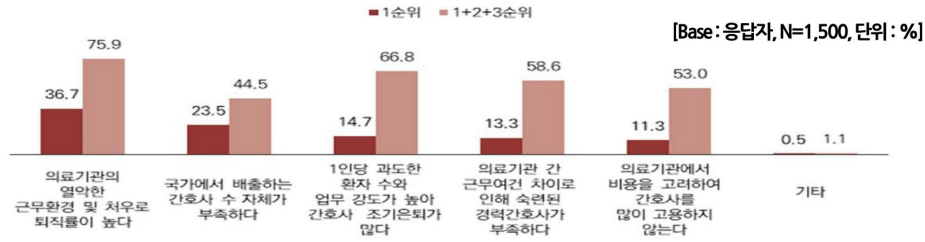
◆ 보건의료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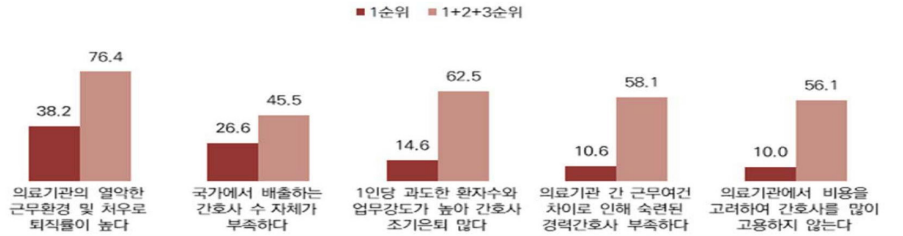
13

간호인력이 부족한 핵심적인 이유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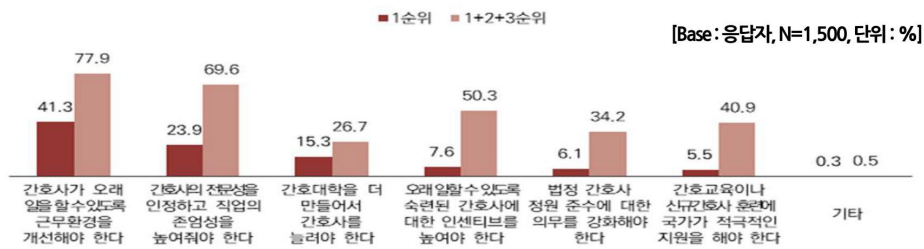
◆ 보건의료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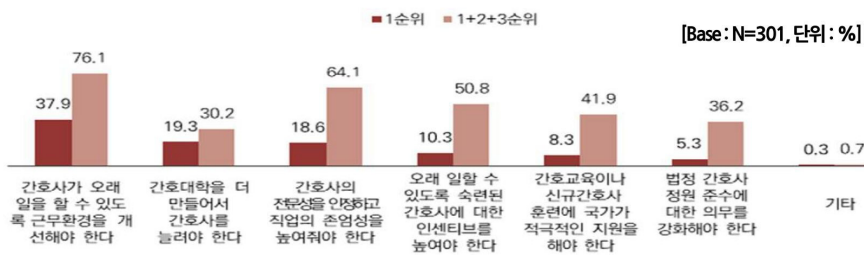
14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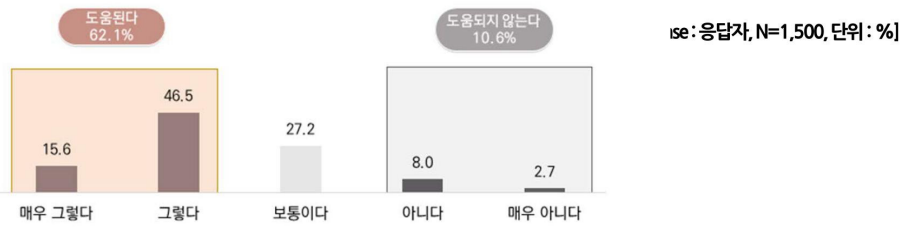
◆ 보건의료인 의견



15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일반 소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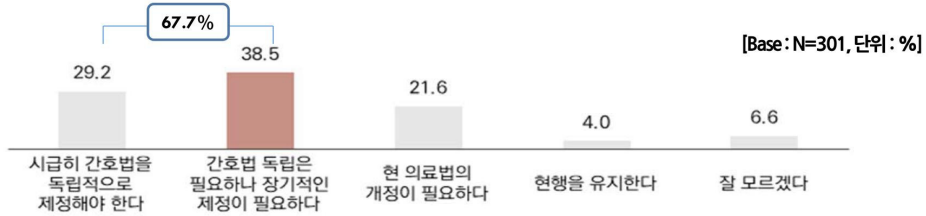
◆ 보건의료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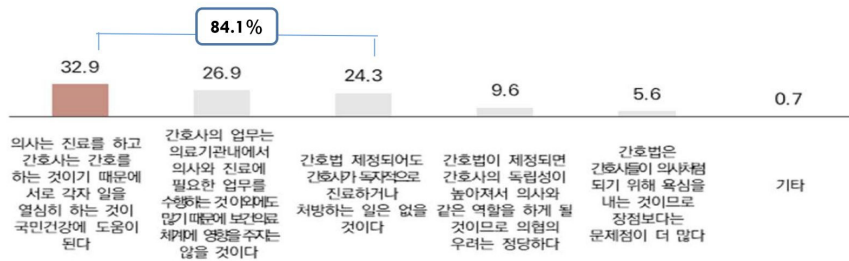
간호법 제정 반대의견과 시기에 대한 보건의료인 의견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시급성에 대한 의견

◆ 시급성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우려에 대한 생각



결론 및 제언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 되려면

- 간호법 제정에 대해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함. 보건의료인은 각 직능간 이해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더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여부, 국회에서의 제정 움직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으며 보건의료인은 알고 있는 경우가 소비자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나타나 오해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동하는 경우 불필요한 우려를 갖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인식수준을 높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코로나 상황 관련하여 인력수급의 중요성,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것을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음.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체계적 양성,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

20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 되려면

-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직역간 이견도 존재하나 새로운 법체계를 갖춤으로서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간호법으로 발전해야 함
- 간호서비스가 더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한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사회, 학교, 보건소 등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그 내용도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변화를 교육과정, 면허취득과정, 재교육과정, 인력수급 계획 등에 충분히 담아내는 미래지향적인 간호정책의 출발은 간호법으로 부터 가능함
-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인력, 간호인력에 대한 각 나라의 장단기 정책 변화가 활발함.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인해 회피사망률이 보통 이거나 높은 수준임

❖ OECD 국가의 의사, 간호 인력 수와 회피가능사망률 수준

* 주,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을 의미함.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1[데이터파일]을 기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센터장이 재정리함



21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 되려면

○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넘어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함. 2020년 이후 감염병 재난 속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 억제되었던 의료이용의 증가에 대응하면서 어떠한 보건의료 위기가 오더라도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조달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함.”

(발췌 : 강희정,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후 보건의료체계는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깨고 일상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재활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함.

○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태도를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민, 소비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안으면서도 합리성,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함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지정토론

좌장 **이은영** 고문((사)소비자권익포럼)

고인석 교수(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정지연 사무총장((사)한국소비자연맹)

전동환 기획실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원일 자문위원(대한간호협회)

윤명 사무총장((사)소비자시민모임)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영미 기자(뉴스시스)

양정석 과장(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지·정·토·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법적 고찰

고인석 교수(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1. 전문자격사제도 단행법률 법제화의 의의

전문자격사제도의 단행법률로의 법제화는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분과 지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에 1차적 목표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제도의 경우 단행법률로 제정이 되어 전문자격사의 자격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련업종의 관리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의 신분·지위 및 업무에 관한 단행법률로의 법제화는 관련 직업에 대한 자긍심 부여와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사회적 편익 향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제도 관련법제는 변호사법,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행정사법, 건축사법 등 주로 단행법률로 입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부동산 중개컨설팅 등 업무영역이 다소 단순업무인 상황에서도 단독입법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신분과 지위과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다. 단행법률로서 전문자격사제도를 입법화하는 취지와 해외 간호사관련 단행법률로의 입법화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의료인과 의료행위의 보조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의료인의 업무영역의 차이를 반영하여 단행법률을 통한 입법화가 타당할 것이다.

2. 「간호법」 제정의 함의

1) 「간호법」 제정이 간호업무영역의 범위설정에 있는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있는가?

「간호법」의 제정은 다원화·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간호업무영역의 명확한 범위설정을 통하여 간호사 직역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설정함에 의해 의료행위에서의 간호사 업무범위의 체계화·세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중심의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간호사의 신분과 지위의 보장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직업만족도를 향상하여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간호법」 제정이 의료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성 있는 간호업무영역의 설정인가?

「간호법」의 제정이 의료영역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본인이 속한 직업영역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및 AI시대로 발전하는 사회현실은 특정 직업분야에서도 업무의 세분화·체계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 의료체계의 혼란상황을 경험하고 있듯이 「간호법」의 제정은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시스템 운영에서의 체계적 운용과 효율성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간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간호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보장이 가능한가?

단행법률화를 통한 전문자격사의 지위와 신분의 보장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와 인력수급균형의 유지 등은 국가인력자원관리의 효율성 달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정책적 목표는 해외국가와 국내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행법률로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전문자격사의 명확한 신분과 지위의 보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자신의 직역에서의 자긍심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편익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

4) 「간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구조의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간호업무 영역설정 및 간호업무의 체계화가 가능한가?

의사업무 및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상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구조의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간호업무 영역설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간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법률상 명확히 설정하여 「의료법」상 의사인 의료인과 「간호법」상 간호사 등의 의료행위에서의 세부 업무의 연계성·체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간호업무와 함께 사회보장사회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화되는 질병예방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및 가사간병 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로 간호업무영역의 체계적 분류를 통한 전문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단행법률로의 「간호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3.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의료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

「간호법」의 제정을 통한 간호업무 범위의 재구성과 전문자격사로서의 간호사 지위 및 신분의 보장과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한 간호사 직역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 고양과 전문성의 보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노령화 사회로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단행법률로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단행법률로서의 「간호법」의 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수반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의 범위확대에 따른 간호직역 종사자의 업무와 역할의 체계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다.

「간호법」의 제정을 통한 예방적·사후적 질적 간호서비스의 제공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한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통한 헌법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정·토·론

소비자관점에서 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정지연 사무총장((사)한국소비자연맹)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의료 기관을 이용해 본 소비자, 특히 입원을 경험한 소비자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간호사의 전문화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소비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진현 교수님, 조윤미 대표님 발제에서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간호서비스가 더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보건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 내용도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변화를 교육과정, 면허취득과정, 재교육과정, 인력수급 계획 등에 잘 담아내는 미래지향적인 간호정책이 필요하다. 조윤미대표님 발제 조사결과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70.2%가 간호법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은 변화하는 의료시스템에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는 정기적인 전문 간호사 인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고, 간호사가 의료기관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호사의 자격, 역할, 업무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고 이와 함께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간호종합계획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직역을 중심으로 반대의 의견도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영역의 충돌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은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사회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 의료소비자 중심 접근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15.7%이며 '26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길 희망하나 노인 사망자 3명중 1명은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노인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사망자 28만5000명 중 노인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 사망자는 9만7985명으로 추정된다.

지역사회 기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신설도 필요한데 2018년 호스피스 필요병상은 2,500병상이나 실제 제공기관 105개소, 1,341병상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가정형 호스피스에 방문간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형병원 중심의 공급체제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부재한 것이 현실로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간호돌봄도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도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간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이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료법상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법의 제정이 다른 직역에 차별이 생기는 부분은 없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역간 이해관계에 의해 소비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이나 사회적비용을 늘리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진현교수님 마지막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간호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고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간호법제정에 국민들이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정·토·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간호조무사 입장

전동환 기획실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1. 간호법에 대한 기본 입장

- 초고령사회, 간호의 역할 커지고 중요하다는 점 공감
⇒ 대안이 “반드시 간호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 동반
⇒ 보건의료체계 변화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병행 필요
- 간호사 단체 제외한, 대다수의 이해관계 당사자 간호법 반대
- 간호법 제정 자체 반대 / 발의된 간호법 내용 반대
⇒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 및 조율 필요

2.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

가.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반대

- 간호법 제정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내용 반대 (조건부 반대)
-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되지 않았음
-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요구 반영은 당연
-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악화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업무 수행 / 의원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수행
- 적용범위 : 의료법은 ‘의료기관’ ⇔ 간호법은 ‘의료기관+@’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인력기준 정한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사회(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간호사 의무배치 ⇒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로 이어질 것

나. 간호법 제정 취지 고려한 간호조무사 요구사항 추가 (간호법 제정 동의 요건)

①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사항
-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막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위험소지가 있다”
- 2013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발표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 2013~2015년 간호인력개편협의체 운영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방안 협의
- ※ 2014년 8월 2일, 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 : 2년제 전문대 양성 포함 6개항 의결
- ※ 2015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포함
- 2017년 헌법소원 : 각하 (당사자 자격 없음)
- ※ “고등교육법상 간호조무사 전문대 학과 개설은 가능”
- 2021년, 백석예술대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 : 간호조무사 대상 신입생 모집
- ※ 하루만에 학생모집 중단 ⇒ 학과명 ‘간호조무과’에서 ‘보건행정과’로 변경
- 간호조무사 50%가 전문대 이상 학력
- ※ 사회복지과 등으로 진학하거나,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간호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 간호조무사 70% 이상이 전문대 필요

②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83만 간호조무사 권리
- 1973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년간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로 활동
- 의료인만 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허위 주장 :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 불인정
-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중앙회 :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막을 권한 없음

③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상 위원회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당연 참여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간호조무사협회 위원으로 참여

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 중 삭제 또는 수정 요구사항

-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 특별법적 지위, 타 법의 권한 침해

- 영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관련 조항 수정
 -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업무에 대한 지도’
-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 수정
 - 제1항‘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항‘의원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를 통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로 수정

지·정·토·론

간호법 제정, 쟁점이 무엇인가?

김원일 정책자문위원(대한간호협회)

1.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

“...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출처 : '21년 11월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 회견문)

○ 주장만 있지 제시된 근거가 없음

-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한다는 호들갑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 간호법 제정 중인 세계 각국에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증거나 사례 없음.
- 간호관련 규정이 단독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무관함.

○ 의료법이 최선? 의료법 = 누더기법

-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후 50년 간의 임시방편적 부분 개정, 전문의·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관련 규정을 보칙에 규정
-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진료, 간호, 보건 등 법률의 주요한 용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정의조차 없고, 면허 업무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 진료 관련 고소, 고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예) 인천21세기 병원 대리수술(시사저널, '21년 9월 6일)

의사보다 실력이 낫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횡행하는 까닭(일요신문, '18년 11월 23일)

2. 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

(출처 : '21년 11월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 회견문)

○ 완전 가짜뉴스

-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없이는 수행하지 못하므로, 진료에 관한 의사-간호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
- 간호사 단독개원 주장은 간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

○ 그럼에도 일부 수정은 필요

- 의사가 지도 또는 처방하여 수행한 진료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검토보고서 등에서 관련 조항 개정이 업역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하여, 간호사가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할 수는 있는 진료 관련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의학회 등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규정(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음)

3.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인력???

“...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 ...”

(출처 : '21년 11월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 회견문)

○ 간호조무사는 기본적으로 간호사 보조인력, 진료보조는 예외조항

- 간호조무사는 1966년 제도 신설 당시부터 간호사 업무를 보조

- ※ 1966년 의료보조원법 시행규칙 제11조(간호보조원의 업무) 간호보조원은 모자 보건, 가족계획상당, 전염병관리, 진료 및 간호등에 관한 간호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 1973년 의료법은 간호보조업무로 규정하였음에도,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보조를 허용, 그러나 해당 조문은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가 있어 2015년 개정
 - ※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의료법도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간호사를 보조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외적 조건,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 간호사의 경우도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에서 예외적 조건, 즉 의료취약지 또는 휴일 및 야간에 하위법령에 위임된 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간호사가 의료행위 일부를 예외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지 않음.
- 진료보조업무를 해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
-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이하(보건뉴스, 2020년 11월 26일 기사), 최저임금을 받은 간호조무사 대다수는 의사가 오너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속되어 있을 것임.
 - 반면 개업의사 월 평균 소득 2030만원... 10년새 90% 상승(데일리팜 2020년 10월 8일 기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니!!!

-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 간호사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임금이 상승될 것이고, 당연히 간호조무사의 임금상승을 유도
 -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대체 업무의 수행은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
 - 간호인력 간 명확한 업무체계가 정립되어야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인력 모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음.

4.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여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 부여???

- 사실관계 다르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 수정 제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규정한다.”로 수정
- 간호법은 특별법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서 간호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도 의사 등을 보조하는 업무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름에도, 타법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부상자 치료)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5. 요양보호사 포함

“...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은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 ...”

(출처 : '21년 11월 22일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 회견문)

- 간호법 제정안에 요양보호사를 규정한 이유는 간호현장(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와 돌봄인력이 함께 일을 할 경우, 돌봄인력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두어, 요양보호사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검증된 돌봄인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3/4이 기초간호부분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만큼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간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다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요양보호사 포함 여부가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쟁점이라 할 수 없음.

〈 변외 〉

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 가중 및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 명백한 가짜뉴스, 더 이상 이런 주장은 하지 않기를...

② 간무협 전제조건, '중앙회 인정2년제 신설'(데일리메디 2월 18일)

- 간호조무사 2년제는 나쁜 정책
 -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되어 이미 공급과잉인 간호조무사의 양성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정책에 정면으로 배치
 - 특성화고와 학원은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로 간호조무사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만 간호조무사의 자질향상이 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 특성화고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공교육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거의 무료로 양성되고 있는 반면, 동일한 교육과정이자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을 전가

구분	전문대학	학원	특성화고
소요금액	2,324만원	250만원(국비 : 200만원~전액지원)	무료

* 출처 : 2020년 전문대학 평균(대학알리미)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양성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들을 대학 출신과 고등학교 출신으로 갈라치기하여 오히려 갈등과 차별을 조장

○ 의료인·의료기사 등 단체

- 의료인 단체(의무설립, 의무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의료기사 등 단체(의무설립, 임의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간호조무사 :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 영양보호사 : 시도지사 자격 ■

지·정·토·론

간호 역할 확대에 따른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점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간호 역할 중요성 확대

-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있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사회 변화와 함께 돌봄이 공공영역의 책임으로 확대
-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편 필요

○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간호법 제정

-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의 의미 :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좀 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걱정된 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 소비자의 80%이상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러나 간호법에 대해 소비자들은 알고 있지 못함
- 간호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현재 우리의 의료법체계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전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조사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지를 필요가 있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받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함께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나 간호 행위 면허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면허권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고 있는 점은 향후 좀 더 국민인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함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필요

-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부족 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을 비롯한 의

료 인력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필요

- 간호인력 문제뿐만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호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램. 이는 환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뿐만 아닌 의료인의 업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의료 인력 수급문제는 매우 중요함)
-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느냐보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났던 공공의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돌봄 영역의 확대에 의한 간호 간병에 대한 전문 보건의료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문영역간의 문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보건 의료 개선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OECD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로 간호 업무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간호법을 통해 어떤 우리 보건의료 전반의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
- 간호업무의 확대에 따른 업무 범위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간호영역 확대에 따른 면허와 자격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간호 업무를 위한 체계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서 검토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간호법 제정이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전문 직역의 문제로 보기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검토해야 함
- 또한 국민들에게 간호법제정이나 의료법 개정에 대해 좀 더 소통하고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지·정·토·론

방역안보 건강안보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으로 부터!

- 간호법 제정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단초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발제1) 김진현 교수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간호의 역할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에 적극 동의
- 발제2) 조윤미 상임대표의 보건의료소비자를 위한 간호법 제정- 소비자과 보건의료인 조사결과 유의미함. 제정 필요성에 공감, 지역 이익 관점 탈출, 충분한 이해 조정에 동의
- 보건의료노조의 공식입장 : [성명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22.1.12.)

국회는 간호법 제정 위한 논의 당장 재개하라!

적정 배치기준 등 종합적인 간호정책 위해 제도정비 시급/ 지역 간 갈등조정, 법안논의 회피 이유 안돼

- * (중략)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9.2 보건복지부와와의 노정 교섭을 통해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정비하고 추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시행(2022년부터)하는 한편,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ratios) 기준으로 개편(2022년)하는 것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2023년부터 5년간),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도의 개편(2022년 3월부터), 불법 의료 근절 및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편으로는 이 노정 합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규정이 필요하며, 간호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 물론 발의된 간호법안을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중복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종합계획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명확히 한다거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 *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 인력 기준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대한병원협회 등 반대에 따른 눈치보기를 넘어 지역 간 갈등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첨언〉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을 기반으로 ‘근무조당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제도화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밤 근무 교대제 개선 등 종합적 간호인력정책 패키지가 완성된다면 팬데믹 창궐, 저출생 고령사회,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상의 간호인력 인프라 구축 가능! + 의사 인력확대 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수준으로)

- 간호법 제정 논의 & 2022년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행복한가? 질문을 던져본다!
 - 2021년 보건산업종사자는 95만 3,000명. 이중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 : 78만 7,000명 으로 총 종사자의 82.5% 차지

〈보건의료 20개 직종별 관련 법령, 면허 등록자, 활동인력, 유휴인력 현황〉

연번	직종	관계 법령	면허등록자*(A)	활동자수**(B)	유휴인력비율(%) C=(A-B)/A×100
	계		2,210,380	787,191	64.4
1	의사	의료법	129,242	107,976	16.5
2	치과 의사		32,335	26,978	16.6
3	한의사		26,096	22,038	15.6
4	간호사		436,340	225,462	48.3
5	조산사		8,220	70	99.1
6	간호조무사		788,247	208,531	73.5
7	약사	약사법	72,530	39,765	45.2
8	한약사		2,779	-	-
9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63,453	26,038	59.0
10	방사선사		48,593	28,435	41.5
11	물리치료사		75,714	43,735	42.2
12	작업치료사		20,292	7,996	60.6
13	치과기공사		36,579	-	-
14	치과위생사		88,422	44,727	49.4
1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7,637	5,440	80.3
16	안경사	45,846	-	-	
17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94,660	-	-
18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161,257	40,000	75.2
19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647	23,691	43.1
20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10,757	-	-

※ 2021. 3. 보건의료인력지원기관 자료 인용 ('20.12월말 기준, 단위 : 명)

- 1)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연대,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정세
 - 우리 사회 화두는 불평등 양극화 심화 (남녀, 정규직-비정규직, 규모별, 지역별, 세대별)
 - 보건의료계도 심각 : 의료기관 종별(1-2-3차) 직종(의사대 비의사) 지역(수도권과 지방) 격차 더 심각. 의료 불평등 확대, 소득계층 간 기대수명 격차 : 6.2년에서 6.5년 확대, 합계출산율 최저 0.84, 저출생초고령사회도래, 지방인구 소멸 전망 (105/228 시군구)
 - 악화되는 보건의료 재정 지표
 - 8.2% : 경상의료비 (GDP 대비) 지속 증가(160조) : OECD 평균 8.8% 거의 도달
 - 6.67% : 소득의 8% 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 거의 도달
- 2) 2021년 9.2 노정합의 : **2022년부터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2022년 내에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관련 직종 공동 대응 제안
- 3)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인력 협의체>를 새 정부 공약 사항인 **의제별 민관합동위원회 제 1호**로 추진할 것을 제안 (정부, 직종협회,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정·토·론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백영미 기자(뉴시스)

우리는 코로나19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에게 ‘백의의 천사’, ‘백의의 전사’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초기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간호사부터 육아휴직 중이던 간호사, 정년퇴임한 간호사, 안식년에 들어간 고령의 간호대 교수까지 현장에서 앞다퉈 달려갔습니다. 장시간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해외에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현재 간호학과 지망생들과 간호학과 졸업을 앞둔 딸, 아들을 둔 부모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간호학과를 목표로 대입을 준비 중인데 사망감만으로 힘든 병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딸이 취업해도 고된 3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태움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만한 처벌조항이 없어 간호사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은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아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2명에서 24명 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9명, 일반병원은 24명 이상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업무범위도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차트를 들고 의사를 따라다니는 드라마 속 간호사를 떠올리면 큰 오산입니다. 환자를 직접 처치하고 간호하는 것은 대부분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담당 의사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검사를 제안하거나 약물 투여량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검사나 투약 처방이 나오면 검사 방법이나 투약법 등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인공호흡기나 각종 생체신호 모니터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도 간호사들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검사와 약물 등을 처방하거나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없는 과에서 의사 대신 수술과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 업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인력 부족에 따른 추가근무, 불분명한 업무범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다 보니 건강을 위협받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줄줄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입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무려 44.5%에 달합니다. 평균 재직기간도 7.8년, 평균 연령은 35.2세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면허가 ‘7년 짜리 면허’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간호사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나이팅게일 정신을 앞세워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숙련된 간호사는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간호사는 24시간 내내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의료 전문직입니다. 결국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환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간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닥칠 위험이 있고 초고령사회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정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

나 국민의 입장에서 간호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건의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간호학과 지망생들과 간호학과 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제33차 소비자권익포럼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